

인천지방법원 2022. 2. 25 선고 2021가단239508(본소), 2021가단246247(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 기타(금전)]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박재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변 론 종 결 2022. 1. 28.

판 결 선 고 2022. 2.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비품을 수거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21. 5.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칼국수전문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점포 소재지 :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 점포규모 : 15.8평 (52.07㎡)
- 상호 : E 인천논현점
- 가맹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지급금액 : 가맹비 3,000,000원, 교육비 2,000,000원, 인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 설비, 집기, 소모품비, 개점홍보비 30,000,000원 합계 3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시기 : 예치금 5,500,000원 (계약 체결 즉시)
계약금 11,000,000원 (2021. 5. 14.)
중도금 11,000,000원 (2021. 5. 21.)
잔금 11,000,000원 (2021. 6. 2.)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지체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예치금, 계약금, 중도금 합계 2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매장에 인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 설비 등을 설치하고 집기를 제공하였으며, 교육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기 중 냉장고만 중고품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주방기기는 신품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주방기기 대부분을 중고품으로 설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27,500,000원의 반환 및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 및 비품의 수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모든 집기를 중고품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매장의 집기에 관하여 “냉장고만 중고품, 나머지는 신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아니면 “전부 중고품”으로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이다.

갑 제2, 5, 9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견적 금액을 35,000,000원으로 조정하면서 전체 집기를 중고품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21. 5. 29. 피고로부터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 싱크대 등의 집기를 제공받은 뒤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집기에 관하여 항의를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중고품을 보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집기의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전략) 실망을 갖게 된 것은 입고된 싱크대, 식기세척기, 홀용 싱크대, 전기온수기가 생각한 것에 비하여 너무나 형편없는 물건이 입고되어 실망을 넘어 화가 날 정도입니다.

싱크대는 사이즈가 가정용 사이즈와 별반 다르지 않고 식기세척기와 연결되어 사용할 수 없는 반쪽 자리의 물건인데 사장님이 모르고 보내셨다고 믿고 싶을 정도입니다.

식기세척기는 누가 볼까 두려울 정도의 물건이네요 과연 저 식기세척기에서 씻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손님에게 낼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저 자신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홀용 싱크대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배송이 되었고 우측 상단서랍장은 손잡이조차 없네요.

전기온수기는 바닥에 놓고 써야 되는 물건을 보내주시어서 주방설비하는 사장님이 갖고 계신던 것으로 교체를 하여 설치를 마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 입고된 물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깎은 것이 저 정도의 물건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저는 앞으로가 심히 더 걱정이 됩니다. 입고될 모든 물건들이 저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이 금액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시다면, 애초에 견적 내주셨던 금액대로 하여 모두 신제품으로 입고를 부탁드립니다. (후략)

② 원고와 피고는 최초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및 설비, 집기 등의 견적으로 39,500,000원을 산정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집기 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3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그런데 주방기기는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가스렌지, 싱크대, 작업대, 전기온수기, 살균소독기 등이 포함되고, 최초 견적서(갑 제2호증)상의 주방기기 항목의 견적이 전체 신제품일 경우의 견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는바, 전체 주방기기 신제품 견적이 7,500,000원인데 냉장고만 중고품으로 변경하여 4,500,000원이 감액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보낸 위 메시지 내용(“ 저희가 500만원을 깎은 것이 저 정도의 물건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금액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시다면, 애초에 견적 내주셨던 금액대로 하여 모두 신품으로 입고를 부탁드립니다”) 을 보더라도 4,500,000원을 감액하면서 주방기기를 중고품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가맹점 중 김천혁신점(15평)은 전체 집기를 신품으로 하여 50,000,000원, 전주혁신점(25평)은 60,000,000원의 견적을 받았다. 원고가 제출한 피고 측 정보공개서에 의하여도 12평 기준 추정 개점비용은 38,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여기에서 원고 측의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초도물품 비용 3,000,000원, 소모품비 5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측의 견적에 포함된 가맹비 및 교육비 5,000,000원, 별도공사비 3,100,000원을 포함하면 42,800,000원 상당이다.

나.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